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15
------------	------

발의연월일 : 2017. 3. 30.

발의자 : 김영주 · 이철희 · 조승래

박찬대 · 김영진 · 백혜련

김태년 · 박정 · 손혜원

안민석 · 설훈 · 이훈

김한정 · 유통수 · 이원욱

김상희 · 김병기 · 신창현

기동민 · 김철민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내 환경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가 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증실험 중심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일부 기업은 개발기술의 실증 실험 단계에서 실제규모에 필요한 기술적용 실험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실증실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하·폐수, 폐기물 등을 해당 배출시설에서 연구실험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실험원료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물질별 개별법상

에 배출·처리 의무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실험 지원 등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기업이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실증실험시설을 환경기초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또한, 입주기업이 원활한 연구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폐수, 폐기물 등의 실험원료를 해당 배출시설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라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부터 제13조의6까지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화·특허 전략과 연계한 연구기획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
 3.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4. 개발기술의 인·검증, 성능확인 및 기술보증 등 사업화
 5. 환경기술·제품 성능 테스트베드 조성 및 운영사업
 6. 입주기업 사업화·경영·마케팅 등 지원 사업
 7. 창업 및 벤처기업 보육사업
 8. 연구인력 양성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환경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관할

환경시설에 입주기업이 연구·실험과 연계한 실증실험시설(이하 “연계형실증실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부지사용료, 사후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관의 실험원료 처리를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이하 “실험원료”라 한다)을 연구·실험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실험시설(연계형실증실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급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운영자 또는 배출자
-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실험원료를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3에 따른 연구단지 위탁기관은 연구단지에 공급된 실험원료 처리를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공동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13조의5(입주기업에 대한 지원)</p> <p>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라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터 제13조의6까지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화·특허 전략과 연계한 연구기획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 3.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4. 개발기술의 인·검증, 성능 확인 및 기술보증 등 사업화 5. 환경기술·제품 성능 테스트 베드 조성 및 운영사업 6. 입주기업 사업화·경영·마케팅 등 지원 사업 7. 창업 및 벤처기업 보육사업 8. 연구인력 양성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환경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관할 환경시설에 입주기업이 연구·실험과 연계한 실증실험시설(이하 “연계형실증실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부지사용료, 사후관리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공공기관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관의 실험원료 처리를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3조의6(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이하 “실험원료”라 한다)을 연구·실험 목적으로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실험 시설(연계형실증실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급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1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
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실험원료를 관계 법
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
으로 본다.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
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의3에 따른 연구단지 위
탁기관은 연구단지에 공급된
실험원료 처리를 위하여 공동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공동 위탁 처리할 수 있다.